의안번호	제3	29호	
의 결	2016년	월	일
연월일	(제	호	l)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6년 1월 15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29 제출연월일 : 2016. 1. 15.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2016. 3. 1.자 본청 기구 개편으로 국별 분장사무 및 충청북도교육과학 연구원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변경함(안 제5조의2)
- 나. 교육국장 분장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삭제함(안 제6조제1항)
 - 1) 장학생 선발, 장학금 관리 및 국외유학에 관한 지도
 - 2) 학교보건 및 학교급식 관련 업무
 - 3)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 다. 교육국장 분장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
 - 1) 국외유학에 관한 지도
 - 2)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
 - 3)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라. 행정국장 분장사무 중 "학생 수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학생배 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함(안 제7조제1항제6호)
- 마. 행정국장 분장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삭제함(안 제7조제1항)
 - 1) 의회협력에 관한 업무총괄 및 지원

- 2) 법제에 관한 사항
- 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 4)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 바. 행정국장 분장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1항)
 - 1) 교육공무직원 지원 · 관리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2)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 3)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사.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의 업무 중 "각급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교육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0조제8호 및 제11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15. 12. 24. ~ 2016. 1. 13.): 결과 별첨
 -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제12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 국외유학에 관한 지도
- 21.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
- 22.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제7조의 제목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하고,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학생수용계획"을 "학생배치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제13호, 제14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2. 교육공무직원 지원·관리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23.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 24.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제10조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교육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

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국의 설치) 충청북도 교육	제5조의2(국의 설치)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및 <u>행정관리국</u> 을	<u>행정국</u>
둔다.	
제6조(교육국) ① 교육국장은 다음	제6조(교육국) ①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장학생 선발, 장학금 관리 및	<u><</u> 삭 제>
국외유학에 관한 지도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12. 학교보건 및 학교급식 관련 업	<u><삭 제></u>
<u>무</u>	
13. ~ 16. (생 략)	13. ~ 16. (현행과 같음)
17.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u><삭 제></u>
18. ~ 19. (생 략)	18. ~ 19. (현행과 같음)
<u><신 설></u>	<u>20. 국외유학에 관한 지도</u>
<u><신 설></u>	21.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
<u><신 설></u>	22.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
	<u>에 관한 사항</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행정관리국) ① 행정관리국	제7조 <u>(행정국)</u> ① <u>행정국장</u>
<u>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u>학생 수용계획</u> 의 수립에 관한	6. <u>학생배치계획</u>
사항	

현 행	개 정 안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9. 의회협력에 관한 업무총괄 및 <u>지원</u>	<u><삭 제></u>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13. 법제에 관한 사항	<u><삭 제></u>
14.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u><삭 제></u>
15. ~ 17. (생 략)	15. ~ 17. (현행과 같음)
18.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u><</u> 삭 제>
19. ~ 21. (생 략)	19. ~ 21. (현행과 같음)
<u> <신 설></u>	22. 교육공무직원 지원·관리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u><신 설></u>	23.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u><신 설></u>	24.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	제10조(업무)
을 관장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각급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	<u><삭 제></u>
9. ~ 10. (생 략)	9. ~ 10. (현행과 같음)
<u><신 설></u>	11. 교육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u>사항</u>

관계법령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5호, 2014.6.11., 타법개정]
- 제8조(실·국 등 기구의 설치) ①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 및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며, 실·국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본청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교육감 직속으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국의 명칭과 사무 분장은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과·담당관 등의 설치)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별첨 입법예고 결과 검토의견

1 입법예고 의견 수합 현황

□ 입법예고 현황

○ 공고번호: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15-294호

○ 예고기간: 2015. 12. 24. ~ 2016. 1. 13.(20일간)

○ 예고방법: 도보, 공문게시,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게시

□ 의견 제출 현황(총 188건)

구분	1 제출	출 유형	② 제출 방법		② 제출 방법 비고	
↑世	개인	단체*	팩스	직접	전자문서	0177
사례수	185	3	184	3	1	

* 단체: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충북교육청지부, 충청북도영양교사회

□ 의견 내용별 분류

항목	내 용 유 형	비고
1	학부모 지원 업무의 행정국 이관 반대	
2	공익법인 업무 행정국 이관 반대	
3	교육행정 전산화 업무 행정국 이관 반대	
4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행정국 이관 반대	
<u>(5)</u>	교육복지 업무 행정국 이관 반대	

항목	내 용 유 형	비고	
6	학교급식 업무 행정국 이관 반대		
7	교육공무직원 업무 행정국 이관 반대		
8	지방공무원 노조 담당부서 폐지 반대		
9	공보관의 장학관 전환 반대		
10	국외유학, 교육정보화계획, 학교보건 업무 교육국 이관 필요		
(1)	기타(일선학교에서 시행처를 기준으로 공문서를 분류하므로 교육국 업무의 행정국 이관 반대, 인력증원 없는 행정국 이관 반대, 조직개편 추진 과정에 이해당사자 참여 필요 등)		

② 입법예고 의견 검토 결과

연번	제출 내용	처리 결과	처리 이유(검토 의견)
1	[의견유형] ①번 - ④번 ☞ 학부모지원 업무, 공익법인, 교육행정 전산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행정국 이관 반대	수용	○ 단위학교의 업무분장 갈등을 최소화 하고자 교육국 유지
2	[의견유형] ⑤번 ☞ 교육복지 업무 행정국 이관 반대	미수용	 교육복지 업무는 교육급여, 교육비지원, 교육정보화지원 등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업무로써, 행정국으로 이관한다고 하여 행정실에업무부담이 급격하게 가중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3	[의견유형] ⑥번 ☞ 학교급식 업무 행정국 이관 반대	미수용	 ○ 학교에서는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의 배치 여부에 따라 업무 소관이 구분되고 있고, 영양교사의 직무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청의 소관이 변경된다고 하여 근본적인 업무소관이 변경되지는 않음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2.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3.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4.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5.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연번	제출 내용	처리 결과	처리 이유(검토 의견)
4	[의견유형] ⑦번 ☞ 교육공무직원 업무의 행정국 이관 반대	미수용	 ○ 교육공무직원 지원・관리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현재 기획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써, ○ 기획관의 통솔범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국으로 이관
5	[의견유형] ⑧번 - ⑪번 ☞ 지방공무원 노조 담당 부서 폐지 반대 등	검토 제외	○ 입법예고 된 조례안은 국(局)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담당 폐지, 부서장 직급 등은 기구규칙 개정사항으로 검토대상에서 제외